

민선8기 1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 의 자 료

일시. 2023. 4. 26.(수) 10:30

장소. 예산군청 대회의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목 차

I. 정책건의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3

II. 시·군 건의사항

1.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 지속 추진 건의(공주) 23
2.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보령) 25
3.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복무관련 상위법령 마련(아산) 26
4.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 건의(아산) 27
5.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서산) 31
6.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현실화 건의(서산) 33
7.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예산 지원(논산) 34
8.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논산) 36
9.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계룡) 37
10.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당진) 42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건의(당진) ... 43
12. 고교무상교육 지자체 경비부담을 합리적 개선(금산) 44
13. 고도 지역에 장기간 사업 지원 시 계속비 교부 필요(부여) 47
1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서천) 48
15.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서천) 49
16. 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청양) 51
17. 산불 피해 복구지원 정책 건의(홍성) 52

18. 농업인 공익수당(농어민수당)국가 정책화(예산)	53
19.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정원 규정 개정 건의(태안)	54

III. 협의회 논의 및 심의

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59
2. 홍성군 산불 피해 지원 논의	64
3.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 건의	65
4.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공동 건의	67
5.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70

IV. 홍보 및 협조사항

1. 2023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홍보 협조(공주)	73
2. 「2023 제2회 보령.AMC모터페스티벌」(보령)	76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아산)	77
4. 향적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계룡)	81
5. 2023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개최(부여)	82
6.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서천)	84
7.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서천)	87
8.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예산)	89

[참고자료]

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현황	93
2. 협의회 세입·세출 현황 보고	95
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96

I .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3
--------------------	---

① 건의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의 명	처리 상황
계			건의	
충청남도			4건	
문화정책과	23.02	천안	•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신청 협조 • K-컬처 박람회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요청	수용
장애인복지과	23.02	천안	• 도내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요청	수용
스마트농업과	23.02	논산	• 면세유 구입비 중 가격상승분에 대하여 도비 (50%) 지원	추진중
자치경찰협력과	23.02	홍성	• 자율방범대법 시행('23.4)에 따라 자율방범 대원의 단체상해 보험 지원	추진중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1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2.11	당진	•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기시행 중장기 검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2.11	당진	•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건의	일부 수용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22.11	서산	•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기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22.11	논산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지침개정	수용 곤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2.11	계룡	•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급량비 인상	중장기 검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2.11	부여	•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수용 곤란
농림식품축산부 (농업기반과)	22.11	홍성	•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중장기 검토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22.11	홍성	• 공무원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중장기 검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22.11	예산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홍보	기시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2.11	금산	• 시·군·구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중장기 검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2.11	천안	•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	수용 곤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23.02	천안 아산	• 정당(정치인) 현수막 제도 개선	검토중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3.02	천안	♦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건의	검토중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23.02	공주	♦ 고향사랑기부제 정기기부 도입 및 운영 개선	검토중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3.02	공주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집행 통계목 신설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23.02	계룡	♦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보류
농림식품축산부 (식량정책과)	23.02	당진	♦ 시장격리곡 매입 품종 확대	검토중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3.02	부여	♦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검토중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	23.02	홍성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한 교육시설 유치	검토중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23.02	태안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검토중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3.02	서산	♦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 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검토중

- 건의사항 처리결과(충청남도) -

1.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적시 추진 지원 협조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3. 02. ○ (건의자) 천안시장
- (건의요지)
 - 2026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신청 시 협조 요청
 - ※ 2023년 하반기 승인 신청 예정(충청남도→기획재정부)
 - 2024년~2026년 K-컬처박람회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협조 요청

< 2024년~2026 K-컬처박람회 예산 요구(예정) 내역 >

(단위 : 억 원)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2024년 요구(예정)			향후투자
				요구	부처반영	정부안(A)	
계	254		28	36			190
국 비	58	-	3	10			45
도 비	60		5	10			45
시 비	136		20	16			100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
 - (국제행사 신청 협조) 국제행사 개최는 국고 지원이 필요한 전전연도 11월말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문체부 및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절차 이행예정
 - ※ '24년까지 신청('23년 하반기 문체부 신청가능 / 검토(보완) 등 대비)
 - (국도비 확보 협조) 정부 K-컬처 육성정책 기조에 부응, 박람회를 교두보로 충남을 대한민국 K-컬처의 중심으로 육성코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추진
 - (향후계획) 24년 K컬처박람회 확대 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23) 26년 K컬처박람회 세계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신청 준비(23 下)
- 검토부서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635-4243)
- 협조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635-3152)

참고**국제행사 추진절차**

구 분	추진 내용
주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제행사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연도 11월말까지 제출)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검토 -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검토의견서를 국제행사심의위원회(문체부)에 제출 및 심의
위원회 (기획재정부)	- 국제행사개최계획서, 타당성조사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서를 심사 - 국제행사유치계획에 대하여 심의·조정
주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국제행사 개최
주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행사 종료 후 사후평가 결과 제출 (3개월 이내, 단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2.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3. 02.
- (건의자) 천안시장
- (건의요지)
 - 충청남도 도립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요청
 - 장애아동 보육 문제를 도 차원에서 장애아동 맞춤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해결책 강구

□ 처리상황

- 검토 결과 : 수용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법령 개정 선행 필요
 -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령개정 건의
 - 법령 개정후 15개 시군 의견 수렴 및 설치 적정성 검토 예정
- 검토부처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041-635-3583)

3.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3. 02.
- (건의자) 논산시장
- (건의요지)
 -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경영 부담 증가
 - * 경유/L ('21년 평균) 804원 → ('23.1월) 1,340 (67%↑)
 - 등유/L ('21년 평균) 773원 → ('23.1월) 1,286 (67%↑)
 -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면세유 구입비 일부(50%) 지원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추진 중
 - 난방비 등 유류 사용이 많은 시설원예농가, 농기계사용농가에 대해 농가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대·전기요금 지원 추진
 -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지원(안)〉
 - * 사업비 : 100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예비비 30억원 사용
 - * 지원대상 : 농기계사용농가 및 시설원예농가 138,419명
 - * 지원단가 : (농기계유류대) 리터당 100원 (난방비지원) 리터당 182원, kw당 8원
 - * 지원기간 : (농기계유류대) '23.1~6월, (난방비지원) '23.1~3월
 - 지원계획 수립 및 시군안내(23. 3월)
 - 지원금 신청접수(23. 3~6월) 및 보조금 지급(23. 3~7월)
- 검토부서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식량산업팀(☎ 041-635-4062)

4.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3. 02.
- (건의자) 홍성군수
- (건의요지)
 - 「^{약칭}자율방범대법」 시행('23.4.27.)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방범 활동 및 훈련 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대원 보호 필요
 - 이에, 도 및 15개 시군이 선제적으로 상해 보험료 지급 결정하여 시군 간 형평성 문제(시군 대원 간 갈등) 사전 예방 요구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추진 중
 - (항목) 도는 차량, 초소 기능보강 등 비용부담이 큰 자본 보조, 시군은 피복비, 교육훈련 등 경상적 경비 위주 부담
 - (비율) 쉰 시군 도비 30% 이상 보조 가능, 시군별 예산 편차 해소
 - 다만, 상해 보험료와 같이 법령 시행으로 신규 지원하는 항목은 수요 조사를 통해 시군 재정부담이 클 경우 도비 보조 검토
 - 도내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추진
- 검토부서 : 충청남도 자치경찰 협력과 기획팀(☎ 041-635-5914)

– 건의사항 처리결과(중앙부처) –

1.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당진시장
- (건의요지)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지정 확대 및 개소별 예산지원 확대
 - 계절근로 사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사업자 지정 권한 부여

□ 처리사항

- 검토결과 : 기시행, 중장기 검토
 - (기시행)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22년 5개소에서 ‘23년 19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며, 향후, 사업 결과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개소 및 예산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
 - (중장기 검토) 광역지자체에 사업자 지정 권한 부여는, ‘22년 시범 사업을 통한 ‘23년 본사업 추진 및 국비 예산 투입, 사업 운영관리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1)

2.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당진시장
- (건의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정이 ‘22년 말 일몰
 -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누적 적립금 고갈이 야기되어 국민부담 가중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상의 한시 지원 삭제,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지원을 현실화 등 법 개정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논의 중, 법률이 개정되어 편성된 ‘23년 예산(10조 9,702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상 지원기준 명확화 및 한시 기준 삭제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부 지원의 내용과 기한은 검토가 필요하며,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일몰 연장 우선 추진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

3. 농업진행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서산시장
- (건의요지)
 - ‘21년 전국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37만톤이 과잉 생산됨에 따라 쌀값 보전을 위해 3차례의 시장격리를 한 결과,
 - 창고 여석 부족으로 4차 시장격리 및 ‘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4차 시장격리곡 및 ‘22년산 공공비축미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기시행
 - ‘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확대 및 ‘21·‘22년산 시장격리곡 추가매입 등에 따라 보관 여석이 부족한 경우,
 -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24년 12월말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 조치하였음(‘22.12.21. 공문시행)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2)

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지침개정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논산시장
- (건의요지)
 - 농업용 저수지 수변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간사업자를 통한 투자·개발이 필요하나,
 -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사용허가 시설의 전대(轉貸)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민간사업자를 통한 관광개발이 불가능함
 - 저수지는 대부분 하천구역이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하천법」에서는 전대가 가능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지침에는 전대 행위를 금지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시 타인에게 전대 행위가 가능토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지침」 개정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전대 금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민간개발이 필요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용 허가를 통해 사업 수행 가능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044-201-1872)

5.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인상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계룡시장
- (건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급량비(매식비)는 2016년도에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식대 인상에 따른 비현실적인 급량비 기준으로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현실화 필요
 -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무원 처우 개선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선하여 식비 및 급량비(매식비) 인상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중장기 검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 ※ 일반운영비(201)에서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규정
 - 물가상승 반영 및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식비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중앙정부와의 형평성(급식단가 7,000원) 등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 ※ 2023년 1월 기준 전국 외식비 가격동향은 외식비의 평균은 9,221원으로 급식 단가에 비해 1,221원 높음(김밥 2,918원, 삼겹살 14,973원 제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78)

6.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부여군수
- (건의요지)
 - ‘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부여군의 신청 수요 대비 배정 사업량은 부족하며,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 (사업량) ‘22년 3,781명 → ‘23년 3,729명(△52명, 수요조사 4,278명 대비 549명 부족)
 - 노인인구 중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해당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량 추가 배정 요청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우리부는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 최근 추진실적 및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인구 비중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 및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 ‘23년 사업량 증가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3,163명, 8.0%)
 - 참고로, 시·군·구별 사업량은 광역 시·도에서 배분하고 있음
 - 또한, 특정 시·군·구에 대한 연도 중 사업량 추가 배분은 수용 곤란하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 및 사업량 배분에 지속 노력하겠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

7.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홍성군수
- (건의요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작로 및 용·배수로의 구조물화가 낮아 경작인의 불편이 매년 증가
 -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 예산 지원 건의(20억/년)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중장기 검토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고 있으나,
 - 예산 규모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관리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음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044-201-1872)

8. 공무원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홍성군수
- (건의요지)
- 정부 차원의 공무원 임금에 대한 통일적 지급 기준 마련 요구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중장기 검토
 -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과 공무원 법제화 논의는 공무원 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왔으나,
 - 공무원 임금체계 및 수준은 기관마다 달라 통일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별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식이 각기 다른 만큼, 공공부문 전체를 통일하는 공무원의 임금 기준 마련은 현실적으로 곤란
 - 따라서, 우선 자치단체의 통일적 임금 기준 마련은 현재 기준 인건비를 통해 자치단체 교부금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처 : 공무원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2-7833)

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요청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예산군수
- (건의요지)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 시행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향우회 및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기부제 권유 독려 행위 금지로 홍보 제한
 -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반 시 고향 사랑 기부금 반환 및 모금 제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홍보 요청을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기 시행
 - ‘22년도 제도 시행 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방송, 라디오, 뉴미디어(유튜브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버스랩핑광고, 설명회, 토론회, 옥외광고, 언론보도, CU편의점 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 ‘23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TV 및 신문 방송 광고 등 광고 효과가 큰 홍보 매체를 동원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월 지자체 워크샷을 통해서 지자체 홍보 협조를 당부하고 있음
 - 특히, ‘23년은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식,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044-205-3514)

10.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금산군수
- (건의요지)
 - 시·군·구 부단체장과 국장 동일직급(4급) 운영으로 조직 내 지휘 및 통솔 문제 발생
 - 시·군·구 부단체장의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한 업무대응력 미약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중장기 검토(자치조직 제도개선TF에서 논의할 계획)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지방4대協으로 구성된 자치조직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방정부 조직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7)

11.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법령 개정

□ 건의개요

- (건의시기) 2022. 11.
- (건의자) 천안시장
- (건의요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감리비 증가
 - ※ 발주청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도록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2019.7.1.시행)
 -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자치단체장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HDC 사고('22.1.11.)의 원인으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면서 오히려 건설사업관리(감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의 역할(공사감독자)은 공사 전반에 부실 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사망사고를 보면 건축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 '22년 사고사망자(1분기) : 건축 67명, 토목 21명, 기타 11명(국토부 CSI 자료)
 - 참고로, 지자체 00도서관 공사의 경우 감리(비상주) 1명을 배치하여 공사 추진 중 사망사고 1명 발생(「건축법」 적용)
 - 만약,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감리(상주 6, 비상주 5) 11명이 배치되어 감독 철저히 사망사고가 없을 수도 있음 (국토부 CEMS 자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II. 시·군 건의사항

1. 호스틸 소화전 설치사업 지속 추진 건의(공주)	23
2.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보령)	25
3.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복무관련 상위법령 마련(아산)	26
4.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 건의(아산)	27
5.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서산)	31
6.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현실화 건의(서산)	33
7.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예산 지원(논산)	34
8.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논산)	36
9.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계룡)	37
10.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당진)	42
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건의(당진)	43
12. 고교무상교육 지자체 경비부담을 합리적 개선(금산)	44
13. 고도 지역에 장기간 사업 지원 시 계속비 교부 필요(부여)	47
1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서천)	48
15.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서천)	49
16. 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청양)	51
17. 산불 피해 복구지원 정책 건의(홍성)	52
18. 농업인 공익수당(농어민수당)국가 정책화(예산)	53
19.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정원 규정 개정 건의(태안) ..	54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①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 지속 추진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예방안전과)
추진기간	2023. 3.~12.	소요예산	50,000천원(지방비)		

◆ 소방사각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 지속적인 추진 건의

□ 현황

- 사업기간
 - (1차) 2015년 ~ 2019년, (2차) 2020년 ~ 2022년
 - 2023년 현재 사업 종료
- 설치현황 : 공주시 61개소 설치 완료
- 총사업비 : 540,000천원(2022년도 기준 1개소당 약 10,000천원 소요)
 - ※ 보조율 : 도비 30%, 시비 70%



<호스릴 소화전>

- 자연부락 및 소방 사각지대에 설치된 공설 소화전
-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선진형 초기 화재 진압 장비

□ 문제점

-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 마을 등 소방사각지역은 소방대원의 출동 시간이 오래 걸려 화재 발생 시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 용수 공급시설이 필요
- 매년 지역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이 종료되어 소방사각지역의 대응력 약화가 우려됨

□ 건의사항

- 호스릴 소화전 설치 3차 사업 추진을 위한 15개 시군 수요 조사 후 신속한 화재대응,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호스릴 소화전 설치 사업의 지속적인 도비 지원 건의

□ <참고> 관련 보도자료

‘마을 비상소화장치’ 강릉 산불 진화에도 한 몫.. 소방당국 확대 설치예정



지난 11일 오후 강릉시 펜션단지의 진입로 옆에 설치된 마을 비상소화장치

“산불이 번지고 있는 마을 곳곳에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어 신속하게 소방 펌프차에 물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 진화작업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산불발생으로 진화작업에 고전을 겪고 있던 소방당국이 인근 마을진입로에 설치된 마을 비상 소화장치로 인해 신속하게 물을 보충하여 산불진화를 하였으며, 그로인해 급속히 확산하였던 불길은 빠른시간 내 잡아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강릉지역에 100개 마을에 설치한 비상 소화장치가 이번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냈으며, “올해 산림과 인접된 154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기관

소 속 : 공주시(시민안전과)

성명: 권혁진 ☎041)840-8656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②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보령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추진기간	2023년	소요예산	20억 원(도비 1.02억 원, 시비 18.98억 원)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도비 지원액이 적어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도비 지원액 상향 건의(102백만원 ⇒ 600백만원)

□ 대회 개요

- 기 간 : 2023. 9. 7.(목) ~ 9. 9.(토) / 3일간
- 장 소 : 보령종합체육관 등 17개소
- 주최/주관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보령시장장애인체육회
- 후 원 :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교육청
- 경기종목 : 21개 종목(정식 16, 시범 1, 전시 4)
- 참여인원 : 14,000여 명(선수 및 임원 5,500 / 도민 8,500)

□ 현황 및 문제점

- 대회 예산 및 도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도 비	시 비	비고
(2023년)제29회충남장애인체전	2,000 (100%)	102 (5.1%)	1,898 (94.9%)	
(2022년)충청남도체육대회	2,868 (100%)	760 (26%)	2,108 (74%)	

- 문 제 점 :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 시비 재정부담 가중

□ 건의사항

- 충남체전 규모로 도비 지원액 상향 요청
↳ 당초 5.1%(102백만원) ⇒ 상향 30%(600백만원)

작성기관

소 속 : 보령시(체육진흥과)

성명: 최인환 ☎041)930-3305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③	법정부 차원의 공무원 복무관련 상위법령 마련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 고용노동부(공무직기획단)
추진기간		소요예산	없음		

◆ 공무원의 복무 및 정치활동 범위 등 법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건의함

※ (공무직) 관공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현 황

구 분	공 무 직	공 무 원
근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법 적용
복무규정	소속기관 훈령	"
후생복지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준함	"
정치활동	보장	불가
노조활동	보장	보장 (일부 제한)

-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나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분의 근로자와는 다름
-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요구, 공무직은 현행 법률로 정치활동 보장
- 소속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과 ‘공무직 단체협약’이 같은 사안으로 충돌 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유사한 사안도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공무직 정치활동 사례

- 아산시 공무직 노조 대표가 공무직의 신분으로 2022년 시의원 출마 하여 낙선 후, 바로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 중임
- 시민 입장에서 공공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공직자로 판단하고 있어 공무직의 정치적 활동에 의구심을 가짐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무직 복무 및 정치활동 범위에 대한 법제화 필요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총무과)

성명: 장은숙 ☎041)540-2308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④	영농자녀 증여농지 공제가액 상향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없음		

◆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와 감면한도액의 이중 제한 개선으로 증여액 공제가액의 실효성 제고

◆ 승계 활성화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상향 등 세제 지원으로 후계농업인 유입 확대

□ 증여세 감면 현황(법령 및 한도내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구 분	내 용
감면대상 범 위	•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0,000㎡ 이내 •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148,500㎡ 이내 • (산림지)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산림지 297,000㎡ • (축사 및 부수토지) 축사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 (어선) 20t 미만, (어업권) 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 40,000㎡ • 주거·상업·공업,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감면한도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

○ 농지 감면대상 상한면적(40,000㎡)의 가액 비교

표준공시지가(원/㎡)			증여액(천원)			비고
전국평균	아산 평균	아산 최저값	전국평균	아산 평균	아산 최저값	
34,947	70,473	7,810	1,397,880	2,818,920	312,400	답 기준 (전은 더 높음)

※ 전국평균 표준공시지가 : 2019년 기준, 아산 표준공시지가 : 2022년 기준

○ 규모 한도의 실효성 비교

표준공시지가(원/㎡)			1억원 감면 가능 최대면적(㎡)			비고
전국평균	아산 평균	아산 최저값	전국평균	아산 평균	아산 최저값	
34,947	70,473	7,810	17,611	7,804	70,423	답 기준 (전은 더 높음)

※ 전국평균 표준공시지가 : 2019년 기준, 아산 표준공시지가 : 2022년 기준

□ 주요내용

- 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증여세 면제 조항 일몰 연장 취지에 부적합
 - 당초 ‘22.12.31.까지 적용되던 증여세 면제 조항 일몰기한 3년 연장
 - 감면받을 수 있는 증여액을 아산 평균 공시지가에 적용하였을 경우 증여농지 규모는 7,804㎡(2,300평)으로 초기소득 불안정으로 영농 진입이 어려움
- 감면액 한도와 제한 면적에 대한 실효성 검토 필요
 - 감면 면적을 적용하였을 경우 증여세액 감면액 상한액보다 높게 책정되므로 감면 면적 제한 불필요
 - 1억 원 증여세를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증여액은 대략 5억 5,000만원으로 전국평균, 아산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실효성이 없음
-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의 편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발생
 -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건의사항

- 감면대상 면적 제한 폐지 건의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액 감면 한도 조정 건의(1억→2억)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농촌자원과)

성명: 한미녀 ☎041)537-3803

붙임1 **관련법령**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2. 31.>

-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1.>
-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붙임2 현장의 목소리(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 ❖ (시기/대상) `22.3.27.~5.6. /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
- ❖ (설문조사 수행기관) 한국 갤럽
- ❖ (주요 설문사항) 영농경력, 영농창업기반(농지·자금·교육), 소득 관련 애로사항 등

□ 설문조사 결과(요약)

- ① (영농시작 단계 가장 큰 어려움) 영농기술 습득(31.7%), 경영자금 확보(30.4%), 농지확보(13.4%), 기초생활비 확보(11.2%)
- ②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 시설·농지 자금 부족(32.5%), 적은 소득(16.8%), 농지 추가 확보 어려움(12.7%), 영농기술 부족(11.4%)
- ③ (농업소득으로 생계 가능여부) 대다수(77.8%)가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보완(70.3%)
* 농가별 월 평균 생활비 : (초기) 266만원, (현재) 306만원
- ④ (농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 높은 농지가격(58.9%), 마음에 드는 농지 부족(25.0%),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14.8%)
* 평균 경작 규모 : (논) 9,624㎡, (밭) 5,456㎡, (과수원) 7,020㎡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부서명	예산담당관
추진기간	2023~2027	소요예산	680억 원(국비 380, 지방비 260 민자 40)		

◆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관련 사업 지방비 재정부담 비율 조정을 통한 기초지자체 재정부담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현황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역점과제*와 관련, 탄소중립 연구기관 서산시 유치 중
 - (역점05)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 (역점09)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및 실증기반 조성
 - (역점10)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탄소중립 연구기관 사업추진 현황

준 공

①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일원
- 총사업비 : 171.2억원(국 60, 도 30, 시 30, 민 51.2)
- 사업내용 : 첨단 정밀화학 소재 산업 지원

공모신청

②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지원센터

- 사업기간 : (잠정)2023 ~ 2027
- 위 치 : 서산시 인더스밸리 산단 내
- 총사업비 : 220억원(국 100, 도 30, 시 70, 민 20)
- 사업내용 :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 표준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공모신청

③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

- 사업기간 : (잠정)2023 ~ 2027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일원
- 총사업비 : 460억원(국 280, 도 48, 시 112, 민 20)
- 사업내용 : CO₂ 포집 · 생물전환 · 광물탄산화 실증 및 상용화 제품개발 지원

□ 문제점

- (시·군 재정부담)탄소중립 분야 도-시군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재정부담비율이 큼(도3 : 시·군7)
- (재투자 부족)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국세 5조원, 도세 80억 원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도 차원의 재투자 부족

□ 건의사항

- (재정부담비율 조정)道 역점과제 관련, 도-시군 공동사업 추진 시도5 : 시·군5로 조정하여 기초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⑥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현실화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 여건 마련

□ 현황

- 업무추진비(소속직원 축의·부의금품) 집행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
 - (부단체장)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지방의회 의원, 유관기관 임직원
- 집행한도액 : 1건당 5만원 ※ 화환 · 조화로 대신할 경우 10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문제점

- (집행 대상) 지자체장 축의·부의금 지급 기준 과도한 규제
- (집행한도액) 물가 인상분 반영 필요

□ 건의사항

- (집행 대상) 지자체장의 집행 대상자 기준을 부단체장과 통일
- (집행한도액) 상향(5만원 ➡ 10만원)

작성기관

소 속 : 서산시(자치행정과)

성명: 박현욱 ☎041)660-3210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⑦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예산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자치경찰행정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도내 자율방범대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방범대 체계적 관리·운영 및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

□ 현황

○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 이후 자율방범대법 본격 시행('23.4.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 4. 26. 제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방법초소 및 차량 현황(논산시)

- 방법초소 : 17개소 중 8개소는 임시 컨테이너 및 가건축물을 사용 중이며 대부분의 초소가 노후됨
- 차 량 : 2008~2010년 도비 지원(50%) 구입으로 교체 시기 도래

□ 필요성

-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필요성 대두
- 방법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보험료 등 지원 부담 가중
- 지역 범죄예방, 선도활동 전개를 위한 차량 구입 및 대원들의 집결, 회의, 순찰장비 보관을 위한 방법초소 기능보강 지속 요구

□ 건의사항

- 비용부담이 큰 차량구입 및 초소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도비50%)
- 연차별, 시군별 균등하고 지속적인 지원 계획 마련

작성기관

소 속 : 논산시(자치행정과)

성명 : 김찬식 ☎041)746-5215

참고**자율방범대 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중)

제2조(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등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자율방범대 및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취득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자율방범활동에 지출된 식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강의료, 교보재 구입비, 교육 장소 사용료 등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⑧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우리 지역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내실있는 충남 권역별 발전방안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유출 및 고령화로 지역의 활력이 저조하며, 제조업 기반 미흡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어려움.
- (정책적 측면)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공간 구조상 북부권에 비해 국가도 정책의 상대적 소외지역임
 - 천안시(미래모빌리티), 홍성군(미래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신규 선정
- (재정적 측면) 충남 대비 산업기반이 약하고 재정력지수가 열악하여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다른 지역 대비 편차 지속 확대 추세임
 - 지역내 총생산규모 : 북부권 56.8%, 서해안권 30.3%, 남부권 12.9%

□ 건의사항

- 도내 낙후도가 심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과제 발굴·실행(서남부권 발전계획 반영)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의 역할 확대·강화
- 자생적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권역별 지역특성화 전략산업 육성

작성기관

소 속 : 논산시(미래전략실)

성명 : 최재룡 ☎041)746-503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3. 4. .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추진기간	2023. ~ 계속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명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센터장을 선임
- 자치단체가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자격요건 항목을 두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일률적으로 너무 높게 규정
- 센터장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이 높아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로 채용이 지체되며, 센터장 공석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

〈 충남 타시군 사례 〉

- ① 아산시
 - 2021. 4월부터 센터장 공석 중으로 5차례 공고를 냈으나 응시자들이 자격요건 미달이었고,
 - 금년에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공고를 냈으나 응시자들이 자격요건 미달로 채용을 못 함
- ② 논산시 : 상근 센터장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워 비상근 센터장을 채용함
- ③ 태안군 : 2020년 센터장 모집공고 시 1차 공고에서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이었고, 재공고해서 채용함

□ 건의사항

- (건의사유) 법규정에 매몰되어 역량 있는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완화 필요
- (건의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신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단, 자원봉사센터장의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건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완화)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 장의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로 신설할 것을 건의

신·구조문 대비표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②~③ 생략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자원봉사센터 장의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현행	신설안
미제정	제2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완화) 자원봉사센터 장의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 미달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사회복지과)

성명: 손석구 ☎042)840-233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⑩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필수의료총괄과)
추진기간	2023~	소요예산	450백만원(국비)		

- ◆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 진료 문제 확산에 따라 소아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충청남도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

□ 현황

-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성이 있는 영유아가 아플 경우 부모의 불안감 증폭
⇒ 충청남도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야간·휴일) 소아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중
※ (참고) 충청남도내 3개 기관 : 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2022~2023년), 당진종합병원(2023년)

□ 문제점

- 충청남도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국비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지방비 전액 부담으로 지자체 부담 大
- (지원내용)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의사 2명, 간호사 2명)
- 예산액: 900백만원/연(도비 180, 시군비 720*)
*소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당진시 자체시비(300백만원) 추가 지원

□ 건의사항

- 최근 붕괴하고 있는 소아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 보건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을 발표 하였으나,
- 정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중
⇒ 이에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사업 추진 일환으로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 지원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감염병관리과)

성명: 최은보라 ☎041)360-6107

건의사항(중앙부처, 충청남도) -

⑪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지역경제진흥과 / 농업정책과)
추진기간	2023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최소에 따른 지역 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

□ 당진시 현황

- (예산액 및 발행규모) 40억 / 400억원(지류 160억원, 모바일 240억원)
- (구매 및 보유 한도) 1인당 월50만원 이내 / 최대200만원

〈주요 변경 사항〉

- 가맹점 등록기준 :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공통)
※ 정책발행(농어민수당 등)의 경우 지침 미적용
-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이내(지자체 자율 결정)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 허용(행안부 사전협의)

※ (연매출30억 이상)가맹점 등록 제한(신규) 및 취소(기존 가맹점)

□ 문제점

-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 적용에 대해 여론이 나뉘고 있음
 - 농·축협과 지역내 소상공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편 초래
 -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내 중심부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는 가맹점이 부족하여 지역내 하나로 마트가 주 사용처인 실정
 - 정책발행(농어민 수당 등)의 별도 운영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혼란 발생

□ 건의사항

- (행정안전부) 농촌지역(읍면)에는 가맹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
-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하여 충전식 카드 및 현금 지급 등으로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조례 등 개정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지역경제과)

성명: 정일용 ☎041)350-4014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⑫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경비부담을 합리적 개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추진기간	2020 ~2024	소요예산	5,775백만원(도·시·군비) /군278백만원		

-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라 충남도·시군
별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 ◆ 기존의 부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학생수, 재정여건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담비율로 개선이 필요함

□ 현황

- 고교 무상교육 경비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구분	도시 및 수도권	농어촌 지역	비고
부담비율	2.9 ~ 4.5 %	5.7 ~ 13.2%	농어촌지역 상대적 과부담
시·도	경기 2.9 % 서울 4.5 %	충남 8.4 % 전북 13.2 %	

- 부담비율 산정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개정시행 전에 교육급여, 복지급여,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등 각각 부담했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
- 2023년 고교 무상교육 시·도별 부담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소요	충남	경기	서울
부담액	68,755	5,775	1,994	3,094
비율	100	8.40	2.90	4.50

※ 경기, 서울에 비하여 충남이 과다 부담, 세부 부담비율 내역 불임

□ 시·도별 자원 부담 비율

(단위 : 백만원)

전국 시·도					부담비율	비고
합계					108.6	
서울	특별	시			4.5%	
부산	광역시				4.5%	
대구	광역시				3.9%	
인천	광역시				3.6%	
광주	광역시				3.8%	
대전	광역시				3.1%	
울산	광역시				3.4%	
세종	특별자치	시			3.0%	
경기	기	도			2.9%	
강원	원	도			9.5%	
충청	북	도			6.9%	
충청	남	도			8.4%	
전라	북	도			9.9%	
전라	남	도			13.2%	
경상	북	도			10.3%	
경상	남	도			5.7%	
제주	특별자치	도			12.0%	

□ 문제점

- 학생수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도시 및 수도권 등 특광역시에 비해 학생수가 적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인 광역도의 부담비율이 높아 부담액이 큰 실정

□ 건의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담비율로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u>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령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u>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학생수 및 시·도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삭 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삭 제>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삭 제>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삭 제>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인구교육가족과)

성명 : 이현만 ☎041)750-4121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⑬	고도 지역에 장기간 사업 지원 시 계속비 교부 필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추진기간	계속	소요예산	-		

◆ 고도 지역에 장기간 사업 지원 시, 포괄적인 예산집행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

□ 현황

- 부여군, 공주시 등은 「고도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도로 지정
- 고도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는 상황
 - 고도육성법 : 고도 지정 구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제
 - ※ 부여군 고도 지정구역 : (특별보존지구) 1.55km², (보존육성지구) 1.25km²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지정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제
 - ※ 부여군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54개, 도지정문화재 58개

□ 문제점

- 고도 지역에 사업예산 교부(단년도) 후 집행 지연 빈번
 - 고도 지역에서 사업 추진 시 문화재 발굴조사, 현상변경허가가 필수적인 상황
- 예산 교부는 단년도가 원칙(예산총계주의)
 - 사업의 적시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이상 지연)

□ 건의사항

- 고도 지역에 장기간 사업(5년 이상, ex-균형발전사업) 예산 지원 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위해 계속비로 교부 필요
 - 근거조항 : 「지방재정법」 제42조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전략사업과)

성명: 황경수 ☎041)830-2477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추진기간	2023. 4. ~	소요예산	-		

-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편익을 침해하는 실정으로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를 건의

□ 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제한
- (변경)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문제점

○ 농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실정

- 농촌지역은 상권과 업종이 제한적이고, 주로 고령층으로 이루어진 인구 특성상 실질적 사용처가 생활권 내로 한정적
- 지역사랑상품권 소비를 통해 인접 도시지역으로의 자본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국비예산 축소로 상품권 할인율 및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등록 범위까지 제한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 목적이 축소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

□ 건의사항

-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완화 요구
-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 규모로만 한정 짓기보단, 생활 밀착성, 활용빈도 등 예외 규정을 두어 고려하는 방안으로 개선 요청

작성기관

소 속 : 서천군(지역경제과)

성명: 김가엘 ☎041)950-4120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⑮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추진기간	2023. 4.~	소요예산	-		

- ◆ ‘20년~ ‘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에 운행해오던 전국 시외버스 노선이 감회되고 일부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군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외버스 노선의 재개를 건의

□ 현황

○ 시외버스 중단 현황

- ‘20년 3월부터 서천↔공주 간 노선 **전면중단(금남고속)**
 - 서울남부행(공주 경유) 3회, 성남행(공주 경유) 1회
 - 대전북합행(공주KTX 경유) 1회
- ‘20년부터 서천↔대전서남부 간 무정차 노선 4회 **전면 중단(금남고속)**
- ‘20년부터 서천↔서울 직행 노선 4회에서 2회로 **감차**
 - 08:20(충남고속), **13:15(삼흥)(감)**, 15:05(한양고속), **16:40(금남고속)(감)**

○ 인근 시·군 서울행 운행 횟수(1일)

시·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비 고
운행횟수	2회 (서울남부)	24회 (서울남부)	6회 (센트럴시티)	19회 (센트럴 시티)	타 시·군 비교 2회 운행으로 적음

□ 문제점

- 서천↔공주 간 경유 노선이 전무하여 공주 이용 군민의 지속적인 교통 불편 호소
- 서천↔대전 간 노선은 부여, 논산, 대전을 경유하는 1일 2회 노선 밖에 없고 2시간 45분 소요로 군민 불편이 상당하며, 코로나 이전의 대전 무정차(1시간35분) 노선이 전무함
- 서천↔서울 노선은 국가시설, 산업단지 등이 입주하면서 군민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1일 2회 감회 운행으로 노선이 적고 특히, 오후 6시~8시 사이 이용객을 위한 노선이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 20년 이후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감회·중단되었던 서천↔공주 노선, 대전 직행(무정차) 재개 및 서울 남부 직행 노선(13:15, 16:40) 재개 건의
- 서울남부 노선 6회 이상 확대 편성 및 18:30분, 20:00분 운행 노선 편성 요청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⑬	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추진기간	2023. ~ 계속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활동 보상금 기준액을 현실화하여 사기 진작 도모 및 처우 개선

□ 청양군 반장 활동 보상금 기준액 현황(2022. 12. 기준)

- ✓ 현 재 : 年 50,000원(759명 × 50,000 = 37,950천원)
- ✓ 인 상 : 年 100,000원(759명 × 100,000 = 75,900천원)
- ☞ 현재 지급액 대비 年 37,950천원 증가

※ 충남 도 반장현황: 22,767명(' 22.12.31.기준), 1인당 평균 93명 주민관리

□ 문제점

- 반장 활동 보상금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액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
 - ※ 우리 군 1인당 평균 40명 주민 관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08) 이후 15년간 수당 동결

□ 건의사항

- 물가상승에 비해 계속된 활동 보상금 동결로 현실성 저하
- 반장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당 인상으로 처우 개선 필요

작성기관

소 속 : 청양군(행정지원과)

성명: 가진한 ☎041)940-2755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정책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사회재난과)
추진기간	2023. 4. ~	소요예산	비예산		

◆ 산불 피해 복구지원 정책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수습 도모

건명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비고
산림복구 조림 사업 도비 지원 상향	- 산림 피해 : 1,337ha - 복구 조림 추진 시 군비 부담 가중 - 임산물 보호 울타리, CCTV 등 감시시설은 복구 대상 제외	- 도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기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복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 임산물 보호 울타리, CCTV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특별재난 선포 지역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 재해 복구 시 건축물 대체 취득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건축허가만 가능 -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 시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개인 하수처리허가, 산림피해복구 위한 입목벌채 등록면허세 감면 제외	재해로 건축물 대체 취득 시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개인하수처리 허가와 산림피해복구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등록면허세 감면 필요	
문화재 긴급보수 지원 등 피해복구 범위 확대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확대 ※ 현재 : 국가지정문화재, 사·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 홍성군 양곡사 일부 소실	'공공시설 중 지방지정문화재' 범위를 시·군 향토 문화유산 까지 확대 적용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제도 개선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공동 대응·건의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안전관리과)

성명 : 구본미 ☎041)630-1817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⑮	농업인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농업·어업·임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 관련,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및 농업인 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화 건의

□ 현황

- 전국 지자체 농어업인 관련 수당 지급현황('23년)
 - 9개 시도, 8,552억원, 1,608천명, 평균단가 60만원 정도
 - 시행 : '20년(전남전북충남), '21년(경가강원), '22년(충북경북경남제주)

□ 문제점

- 각 지자체별 금액·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수혜적 불평등 발생, 지역간 소득편차 심화, 지자체간 경쟁 발생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공익수당'의 동일한 정책 방향 필요
 - 농업인 공익수당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

□ 건의사항

-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의 정부 정책사업 전환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농정유통과)

성명: 양영석 ☎041)339-7562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⑬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정원 규정 개정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군)	건의일자	2023. 4. 26.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인구10만 미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이 동일직급으로 운영, 이에 따른 계서 체계 불부합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의

□ 현황

-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의 직급 정원은 본청 농업행정 기능과 통·폐합 시
 -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 ⇨ 소장 4급(지도관), 과장 5급(지도관)
 -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 ⇨ 소장 및 과장 5급(지도관)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8항

□ 문제점

① 직제 및 계서(階序) 상 불일치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소장, 과장 직급이 5급(지도관) 정원으로 같아 소장의 5급 임용이 계서 체계 상 맞지 않음.

② 단순 인구 수 비교에 따른 정원 구분은 모순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으로 감소되어 규정과 불일치 상황 발생
- 시·군 간 농가인구 수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구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군부가 압도적으로 높음.
 - 평균 농가인구 비율 : (도내 8개 시) 12% / (도내 7개 군) 27.8%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원을 현실에 맞게 시·군 간 통일 필요

□ 건의사항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 직급 정원을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과 동일하게(소장 4급, 과장 5급) 규정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별표 2 제3호 비고 제1호 중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 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비고 제1호 중 1.----- ----- ----- ----- ----- <u>(소장은 4급 또는 5급을,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한다)</u> ----- ----- -----

<참고자료 : 도내 인구수 및 농가 비교표(출처:통계청(KOSIS))>

시군	인구수('23년)	농가수	농가인구	인구대비 비율	소장직급
합계	2,123,625	122,142	266,509		
천안시	657,417	11,111	27,245	4.14%	지도관
공주시	102,480	9,281	20,258	19.77%	4급·지도관
보령시	96,819	7,792	16,641	17.19%	4급·지도관
아산시	336,748	8,847	19,952	5.92%	4급·지도관
서산시	176,189	11,082	24,141	13.70%	4급·지도관
논산시	112,161	9,882	21,247	18.94%	지도관
계룡시	44,523	513	1,237	2.78%	지도관
당진시	168,472	10,177	22,898	13.59%	지도관
금산군	50,206	6,001	13,183	26.26%	지도관
부여군	62,019	9,279	19,918	32.12%	지도관
서천군	49,808	5,940	12,146	24.39%	지도관
청양군	30,127	6,355	12,933	42.93%	지도관
홍성군	97,512	10,029	21,265	21.81%	지도관
예산군	78,127	9,273	20,065	25.68%	지도관
태안군	61,017	6,580	13,380	21.93%	지도관

작성기관

소 속 : 태안군(행정지원과)

성명: 서동희 ☎041)670-2424

Ⅲ. 협의회 논의 및 심의

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59
2. 홍성군 산불 피해 지원 논의 64
3.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 건의 65
4.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공동 건의 67
5.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70

심의사항

①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 개정(안)

□ 개정 주요 내용

- 제2조(목적)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
 - 현행 :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종)
 - 변경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 제11조(의결) 2항 및 3항 추가
 - 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 대리참석하여 토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생략)	제2조(목적) ----- - 제169조 ----- ----- -----
제11조(의결) <u>협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축격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제11조(의결) ① ----- ----- ----- ----- ② <u>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u> ③ <u>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u>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07.
 (일부개정) 2023. 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논의사항

② 홍성군 산불 피해 지원 논의

- ◆ 홍성군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 관련 임시회의(23.4.4) 이후
시·군의 의견 결과 공유 및 지원계획 논의

* 회칙 (제15조3항)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

□ 시·군별 지원에 대한 의견

- (지원 결정) 천안, 아산, 서산 ⇒ 총 3천만원(각 1천만원씩)
- (그외 시군)
 - 지원금액 결정은 정기회의시(4.26) 논의 후 결정 의견(8개 시군)
 - 재난시 선례에 따라 협의회 예비비(1천만원) 납부(공주,논산)
 -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군(보령,당진,금산,부여) 지원 검토 필요(보령)
- * 22년 재난 지원(특별재난 지역/각 1천만원) 울진, 삼척, 동해 / 서산, 부여, 청양, 보령
- * (참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3천만원 전액사용

□ 지원금액(안)

- (지원금액 결정)
 - ⇒ 원칙은 자율지원이나, 시군별 5백만원이상 지원으로 기준 설정
 - * 천안, 아산, 서산 1천만원 / 홍성군 제외
- (기부 시기) 추경확보등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또는
최종금액 입금시 공동모금회 기탁

□ 향후계획

- 지원결정 후, 5월초 시군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논의사항

③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 건의

- ◆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방지 및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건의

□ 현황

- (형평성 논란)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22.12.11.)으로 정당현수막은 15일간 장소불문 게시, 일반현수막과의 차별적 기준으로 혼선 야기
-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위협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

□ 건의사항

- 23.2월 회의시 천안시와 아산시의 정당현수막 제도개선 요구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하였으나,
- 최근 정당 정책의 알림의 목적보다는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난문구 등 주관적인 구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 특히 24년 총선을 겨냥한 각양각색의 정당현수막이 더욱 난립하여 시민의 불편과 안전위협, 도시미관 훼손, 폐현수막 환경오염 등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법이 조속히, 공정하게 개정되도록 협의회 차원으로 공동 건의 필요
- 또한 불법현수막 제거 담당공무원이 기물손괴등으로 고소·고발 되고 있어 관련직원의 보호조치 규정 마련 건의.

□ 향후 계획

- 건의문 작성, 관계기관에 건의 추진

정당 현수막의 공정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 건의문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의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불법현수막 민원에 시달리는 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장소 불문하고 장기간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운전 및 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일반인과 정당인 현수막의 차별적 게시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져 옥외광고물법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기에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불법현수막 제거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각종 민원 및 고소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보호조치 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당(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법령 개정과 불법 현수막 관련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 다 음 -

1.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게시 기간,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법령 개정.
2.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

2023. 4. 26.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 일동

논의사항

④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공동 건의

【 홍성균 】

- ◆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광역시·충청남도로 병기, 지역 대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 재검토 의견 제출

□ 현황

- 교육부는 3월 31일, 시행령과 국립대학 운영 상황 간의 괴리로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안 발의·입법예고(3.31.~5.10.)
- 개정안을 통해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대학의 주된 위치 개정은 현행화 수준 (※ **충남대학교 : 대전광역시로 변동 없음**)

<신설조항 발췌 : 제7조(시설 등)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은 제3조에 따른 **주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총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동의한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주된 위치 밖 시설 설치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건의사항

- 23. 2월 회의 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교육기본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충남도민에게만 특별히 제한
- 지역 형평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광역시·충청남도로 병기 건의

□ 향후 계획

- 건의문 작성, 관계기관에 건의 추진

참고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개정안 발췌

학교의 명칭·주된 위치 및 과정 (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주된 위치	학교명	주된 위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강원대학교	강원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경기도·충청북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경상남도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국립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주된 위치 대전·충남 병기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공동 건의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중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 지역대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시행령과 국립대학 운영 상황 간의 괴리로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서 학교의 소재지 개념을 주된 위치로 변경하고, 각 대학의 장이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위치 외의 지역에도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돕는 진일보한 조치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가 대전광역시로만 한정되어, 충남의 대표 국립대학이 충남도민의 품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충청남도민들의 정당한 바람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만일 이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충남을 대표하는 충남대학교가 충남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과는 다르게 총장의 요청과 장관의 동의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충청남도민에게만 특별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0만 충청남도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회복하며, 그동안 충남도민이 감내해 온 소외 정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에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광역시·충청남도로 병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3. 4. 26.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 일동

⑤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협의회 회의 개최지 사전 논의

□ 회의 개요

- 근거 : 『협의회 회칙』 제10조 (회의)
- 참석대상 : 충남 시장·군수 15인
- 회의개최 : 격월(연 6회)
- 주요내용 : 협의회 활동사항, 시군 건의사항, 논의안건 등 보고

□ 개최지 선정

- 개최시기 : 2023. 6월 중(협의)
- 개최장소 : 협의

□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민선 7기 3차연도	2020.07.13.(월)	서산 베니키아 호텔	
	2020.12.16.(수)	영상회의	
	2021.01.28.(목)	영상회의	
	2021.03.29.(월)	영상회의	
	2021.05.27.(월)	논산시청 회의실	
민선 7기 4차연도	2021.09.07.(화)	공주 아트센터 고마	
	2021.12.21.(화)	금산군청 다목적 회의실	
	2022.03.28.(월)	충남도청 대회의실	
	2022.06.09.(목)	홍성군청 회의실	
민선 8기 1차년도	2022.09.16.(금)	천안시청 대회의실	
	2022.11.17.(목)	청양군청 대회의실	
	2023.02.23.(목)	서산시청 대회의실	

IV. 홍보·협조사항

1. 2023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홍보 협조(공주)	73
2. 「2023 제2회 보령.AMC모터페스티벌」(보령)	76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아산)	77
4. 향적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계룡)	81
5. 2023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개최(부여)	82
6.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서천)	84
7.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서천)	87
8.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예산)	89

홍보 및 협조사항

1 2023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홍보 협조

【 공주시 】

- ◆ 한국 구석기의 출발지인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 전시 ·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축제 개요

- 기 간 : 2023. 5. 5.(금) ~ 5. 7.(일) / 3일간
- 장 소 : 공주석장리박물관 및 상왕동 일원
- 주 제 : 석장리 탐험가! 구석기 모험기!
- 총 사업비 : 9.3억원(도비 0.26, 시비 9.04)
- 주최/주관 : 공주시/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분 야 별	주요 프로그램
공식행사	▸ 개막식(5. 5.(금) 17시), 폐막식(5. 7.(일) 16시)
구석기 프로그램	▸ 구석기 체험(16종), 구석기 퍼레이드 ▸ 구석기 음식나라, 구석기 사냥픽 ▸ 석장리 발굴 재조명 연출 특별공연
특별(힐링) 프로그램	▸ 특별기획전 ‘선사예술가’ ▸ 구석기 어드벤처 ▸ 감성 포토존
친환경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재활용) 체험프로그램(3종)
병행 프로그램	▸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 어린이날 기념행사(5. 5. 10시)
판매·체험·먹거리	▸ 고맛나루 장터 및 농·특산품, 알밤한우 판매 ▸ 소방안전체험, 버들피리 농촌체험 등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시군 홈페이지 축제 홍보물 게시 및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 시군 기관·단체, 학교 등 축제 개최 홍보 및 안내

참고1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

분 야	프로그램명	행사내용	비 고
공 식 (2)	개 막 식	• 개막오프닝쇼 / 5. 5.(금) 17시	주무대
	폐 막 식	• 석장리의 밤 / 5. 7.(일) 16시	주무대
구 석 기 (5)	구 석 기 체 험	• 구석기관련 체험 프로그램	잔디광장
	특 별 공 연	• 석장리 발굴 재조명 연출 공연	주무대
	구 석 기 퍼 레 이 드	• 구석기퍼레이드+정지공연(뮤지컬)	행사장내
	구 석 기 사 냥 픽	• 구석기 도구 등을 활용한 사냥체험	박물관 후문
	구 석 기 음 식 나 라	• 구석기 음식체험 (석장리마을협동조합)	잔디광장
특 별 힐링 (3)	특 별 기 획 전 '선 사 예 술 가'	• 세계유명 구석기벽화 특별전시	손보기기념관
	감 성 포 토 존	• 관광객 힐링 감성 포토존 조성	행사장 일원
	구 석 기 어 드 벤 처	• 관객주도형 연극 퍼포먼스	잔디광장하단
친 환 경 (2)	친 환 경 프 로 그 램	•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잔디광장상단
	친 환 경 모 래 놀 이 터	• 모래놀이터 조성으로 환경친화	잔디광장상단
병 행 (2)	구석기 그림그리기 대회	• 전국 어린이 대상 / 5. 5.(금)	행사장 일원
	어 린 이 날 행 사	• 어린이날 기념 행사 / 5. 5.(금)	주무대
기 타 (7)	부 교 건 너 기	• 상왕동 행사장 부교 건너기	박물관-상왕동
	고 맛 나 루 장 터	•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상왕동
	공주알밤한우 홍보, 판매	• 공주알밤한우 홍보, 판매	상왕동
	알 밤 밋 밤 가 공 식 품 판 매	• 공주알밤홍보관 및 판매	상왕동
	농 촌 체 험 홍 보 부 스	• 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홍보부스	상왕동
	사 회 적 기 업 홍 보 부 스	• 체험부스, 사회적기업 홍보	상왕동
	어 린 이 놀 이 시 설 운 영	•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상왕동

참고2

2023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홍보 포스터



주최 : 공주시

주관 :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보 및 협조사항

2 「2023 제2회 보령.AMC모터페스티벌」

【 보령시 】

- ◆ 지역관광 및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제2회 보령.AMC모터페스티벌」을 개최

□ 개요 · 현황

- 행사명 : 2023 보령.AMC모터페스티벌
- 기간 : 2023. 5. 27.(토) ~ 5. 29.(월) / 3일간
- 장소 :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
- 주최/주관 :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AMC), (재)보령축제관광재단
- 주요행사 및 체험
 - (공연·행사) 개막·축하공연, 자동차·바이크 전시
 - (체험행사) 짐카나, 드리프트, 황금조개 잡기 체험
 - (국내·국제대회) 짐카나 및 드리프트(자동차), 엔듀로(바이크)
- ※인위적인 코스 및 구조물 통과, 산악 험로 등을 주행하는 대회
- (기타) 서킷 레이싱팀 초청 사인회, 수산물 홍보·무료시식(조개구이), 이벤트 행사 등 ※ 2023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연계

□ 홍보사항

- 제2회 보령.AMC모터페스티벌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짐카나



드리프트



엔듀로바이크

홍보 및 협조사항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

- ◆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기를 맞이하여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로 이전과는 다른 더 성대한 규모와 더 완성도 높고 품격있는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고자 함

□ 개요

- 축 제 명 :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이순신축제
- 목 표 : 이순신 대표축제로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조
- 주 제 : ‘성웅 이순신 세상을 품다’
- 주최·주관 : 아산시/(재)아산문화재단
- 기 간 : 2023. 4. 28.(금) ~ 4. 30.(일) (3일간)
- 장 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광장, 곡교천 일원

□ 주요내용

사전 행사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곡교천/역광장
친수식/ 이순신 학술세미나	· 개막식, 폐막식 · 삼도수군통제사 깃발게양식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 ‘이순신테마’ 문화예술특별공연	· 군악의장 프린지공연 · 이순신 창작시·시낭송 대회 ·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 · 대통령 전국 시·도대항 궁도 대회	· 제1회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 군악의장 거리 퍼레이드 ·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 승마체험·무예시범 · 난중일기 열기구체험
	· 곡교천/현충사/백의종군길 :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마라톤대회		

□ 협조사항

- 도지사님 및 시장·군수님 축제 개막식 참석 요청 (초청장 발송)
- 시·군별 다양한 홍보채널(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 적극적인 홍보 요청

붙임 축제 포스터

제62회

성웅 이순신축제

아트밸리 아산

성웅 이순신, 세상을 품다

Art Valley ASAN

2023 | 4/28.29.30.

● 이순신종합운동장 ● 현충사 ● 온양온천역 광장 ● 곡교천 일원

● 제1회 아트밸리아산 군민이벤트 페스티벌 ● 제1회 아트밸리아산 이순신영웅 순정행렬 ● 상도수군통제사 첫발 제막식 ● 제1회 아트밸리아산 책거리문집 일기대회 ● 난중일기 컨퍼런스 ● 국립국악원 이순신전기 ● 428현충일공감 ● 시메타 강도연공시발단 특별공연 ● 수곡예비 특별공연 ● 아산신 스토리텔링 ● 국제예술인 릴레이페스티벌 ● 옥서당송 ● 난중일기시낭독회 ● 난중일기 박물관이벤트 ● 이순신예술제이벤트 ● 제1회 아트밸리 아산 북프랑스길 디아스포라제 ● 난중일기 일기구체화 ● 제2회 대통령기시 도태할 군도대회 ● 이순신동상 전주시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붙임 축제 일정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축제



2023 | 4/28.29.30.

- 이순신종합운동장
- 현충사
- 온양온천역 광장
- 곡교천 일원

개·폐막식

일시 | 개막식 4/28(금) 18:00, 폐막식 4/30(일) 18:00
장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용 | 상도수군통제사 깃발게양식,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이순신 찬가',
 전통의장시범, 아산시립합창단 칸타타 '난중일기',
 불꽃쇼 등

주요 프로그램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일시 | 4/28(금) 14:00 **장소** | 온양온천역 광장
내용 | 장군의 위상에 걸맞는 기마대와 기수단의 장엄한 행렬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일시 | 4/28(금) ~ 4/30(일) 3일간 ※세부일정 누리집 참고
장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아산시 일원
내용 | 전국(全軍) 군악, 의장대 약 7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군악의장 페스티벌』
 ※거리퍼레이드 : 4/28(금) 14:00(온양온천역 광장)

이순신 테마 문화예술특별공연

일시 | 4/29(토) ~ 4/30(일) 2일간
장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용 | 「스맨파」 원일리언, 저스트절크 '학익진스트릿댄스',
 하모나이즈 쇼파이어 '나를 태워라',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
 '필사즉생 필생즉사' 등

체험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일시 | 4/29(토) ~ 4/30(일) 2일간 10:00 ~ 19:00
장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곡교천 일원
내용 | 송마체험(기승, 먹이주기 등), 드론축구, 북아트,
 난중일기 열기구 체험(현장접수/참가비 5,000원),
 페이스페인팅, 향수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

※사전접수 중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일시 | 4/29(토) 08:30
장소 | 효의 길(인주), 충의 길(둔포), 구국의 길(배방)
 동시출발
내용 | 충무공의 백의종군길 여정을 복원한 3개 코스
 걷기 체험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대회

일시 | 4/30(일) 09:00 **장소** | 현충사 출발
내용 | 충무공의 백의종군길 '충의 길' 마라톤대회
 (5km, 10km, 하프, 풀)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일시 | 4/28(금) ~ 4/30(일) 3일간 13:00 ~ 15:00
장소 | 현충사 일원
내용 | 이순신 창작시&시낭송대회,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백일장



문의사항

문 의 | 아산시 콜센터 1422-42
 (재)아산문화재단 041-540-2428
누리집 | 포털사이트에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검색
 (culture.asan.go.kr/_esunshin/n23)
 ※자세한 공연일정 및 참여일정은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제
누리집
바로가기





아트밸리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일정표

제 62 회

	4/28(금)	4/29(토)	4/30(일)
이순신 종합 운동장	18:00~18:50 - 칸타타 '난중일기' (아산시립합창단) 19:00~20:00 - 상도수군통제사 깃발게양식 - 개막입장 퍼포먼스 - 전통의장시범 - 개막합동공연(합동군악대, 428합창단, 불꽃쇼) 20:00~21:00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10:00~19:00 - 상설체험프로그램 14:00~14:30 '학익진스트릿댄스' ('스맨파', 원일리언) 14:30~16:30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17:00~17:30 - 난중일기 골든벨 18:00~18:25 - 태권도 시범 '필사즉생 필생즉사'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18:25~19:00 - 쇼콰이어 '나를 태워라' (하모나이즈) 19:00~21:00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10:00~19:00 - 상설체험프로그램 14:00~14:30 '학익진스트릿댄스' ('스맨파', 저스트질크) 14:30~16:30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16:40~17:40 - 영화 '명량', '한산' 한 번에 몰아보기 18:00~19:00 - 특별공연 '이순신 찬가' (국립국악원 무용단·창작악단) 19:00~20:00 - 군악의장 특별공연 '장군의 후예들' 20:00~21:00 - 폐막입장 퍼포먼스 - 폐막합동공연(합동군악대, 428합창단, 불꽃쇼)
은양 은천역 광장	14:00~15:00 -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 군악의장 거리퍼레이드 15:00~17:30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버스킹	12:00~14:50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버스킹 15:00~16:00 프리지 - 군악의장 공연 16:00~17:30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버스킹	12:00~14:50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버스킹 15:00~16:00 프리지 - 군악의장 공연 16:00~17:30 '이순신을 외치다' 지역예술인 릴레이버스킹
현충사	08:00~16:00 - 대동령기 전국 사·도대항 궁도대회 13:00~15:00 - 이순신 창작시 & 시낭송대회	08:30~15:00 -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13:00~15:00 -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15:00~16:00 프리지 - 호국퍼레이드 - 군악의장 공연	09:00~13:00 -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대회 13:00~15:00 -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 15:00~16:00 프리지 - 호국퍼레이드 - 군악의장 공연
곡교천 일원	 10:00~19:00 - 송마체험, 무예시범 등 15:00~16:00 프리지 - 군악의장 공연 17:00~19:00 - 난중일기 열기구 체험	10:00~19:00 - 송마체험, 무예시범 등 15:00~16:00 프리지 - 군악의장 공연 17:00~19:00 - 난중일기 열기구 체험	10:00~19:00 - 송마체험, 무예시범 등 15:00~16:00 프리지 - 군악의장 공연 17:00~19:00 - 난중일기 열기구 체험

사전 행사 4/23(일) 11:00~12:30 신정호 이순신장군 동상 천수식
4/25(화) 13:00~17:30 이순신 학술세미나(은양제일호텔)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극 이순신
세상을 품다



홍보 및 협조사항

4 향적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 계룡시 】

- ◆ 계룡시 대표명산인 향적산의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시설현황

- 위 치 :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
- 규 모 : 532,196㎡
- 조성기간 : 2017 ~ 2021
- 사 업 비 : 금50억원
- 주요시설 : 치유센터(지상 2층, 연면적 484.12㎡), 동행데크로드, 동행·상상·가치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 3. 14. ~ 2023. 11. 30.(매년 약 9개월)
- 체험시간 : 1일 2회, 오전 10시, 오후 2시(2시간씩)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명절연휴 등
- 체험인원 : 회당 16명 이내
- 체 험 료 : 5천원(개인), 4천원(단체, 10명이상)
※ 50% 감면 : 계룡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체험예약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www.grhealingforest.kr) 및 결제
- 내 용 :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숲길체험, 꽃차테라피, 싱잉볼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치유장비 체험 등

□ 협조사항

- 일상에 지친 도민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의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하고 숲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

홍보 및 협조사항

5 2023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개최

【 부여군 】

- ◆ 2019년도에 시작한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등을 활용한 부여군의 대표 봄축제로서 방문객들에게 세계유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

□ 개요

- 행사명 : 2023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 주제 : “ 5월의 봄을 부여답다 ”
- 기간 : 2023. 5. 5.(금) ~ 5. 7.(일) / 3일간
- 장소 : 관북리유적 및 부소산성 일원

□ 홍보사항

- 주요내용
 - (공식행사) 개막식(5. 5.(토) 19:00~21:00)
 - (공연프로그램) 부소산 “봄의 향연”, 어린이뮤지컬 공연 등 5종
 - (체험프로그램) 부소산 오감테마형 ‘힐링산책’ 등 22종
 - (전시프로그램) 감성유등, 달빛의 세계(포토존) 등 2종
 - (이벤트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운영, 명사초창강연, 감성피크닉샌더, 캐릭터인형탈 등 7종
- 협조사항
 - 지역별 관광안내소·다중이용시설 및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축제 포스터 게재 협조

붙임 - 2023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포스터 1부



홍보 및 협조사항

6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 서천군 】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산모시문화제 개최

□ 행사개요

- 주 제 : 1500년 한산모시, 이음과 만남
- 기 간 : 2023. 6. 9.(금) ~ 6. 11.(일) / 3일간
- 장 소 :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
- 주 최 : 서천군
- 주 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 주요행사 : 한산모시 마라톤대회, 저산팔읍길쌈놀이, 한산모시학교, 모시옷 입기 체험, 한산주막, 상설키즈존, 어린이 모시동요제, 신진디자이너 경진대회
- 공간구성(6개 마당)

전통마당	이음마당	만남마당	맞이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한산모시학교 ·전통문화체험	·개·폐막식 ·모시동요대회 ·저산팔읍길쌈놀이 ·기관홍보부스	·주민예술공연 ·먹거리부스 ·특산품판매	·방문자센터 ·모시옷입기 ·사진인화부스	·미니베들짜기 ·한산주막 ·농촌체험 ·119안전체험	·키자니아고! ·공방상설체험 ·드론체험 ·바닥분수

□ 협조사항

-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협조

붙임 홍보 포스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3
문화관광축제

1500년을 이어온 한산모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봅니다.

이음과 만남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HANSAH MOSI The Tradition of Millennium

2023.
6.9(금)
|
6.11(일)
한산모시관 일원



| 주최  서천군
 | 주관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2023 서천한산모시 마라톤대회

대회일시

2023. 06. 11 (일) 9시 출발

대회장소

한산모시 체육관 주변도로

신청기간 2023년 05월 15일 오후 5시까지

대회종목 10km 코스(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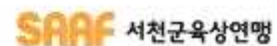
5km 코스(25,000원)

5km 커플런 - 2인 (1인 25,000원)

5km 가족런 - 3~4인 (1인 25,000원)

참가인원 선착순 2,000명

접수처 www.mosirun.com



홍보 및 협조사항

7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 서천군 】

◆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명소인 서천 마량진항에서 제철 수산물인 광어와 도미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축제 개최

□ 행사개요

- 기 간 : 2023. 5. 13.(토) ~ 5. 28.(일) 16일간
- 장 소 : 서천군 마량진항 일원
- 주최/주관 : 서면개발위원회
- 후 원 : 서천군
- 주요 내용
 - (공연) 개막·축하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
 - (체험) 맨손 광어잡기 체험, 보물찾기, 어부 아저씨의 내 맘대로 깜짝경매
 - (상설) 광어·도미 요리장터, 수산물 판매장, 지역특산품 판매 등

□ 협조사항

-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광어·도미 축제에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맨손 광어 잡기 체험



광어를 활용한 제철 음식

붙임 **홍보 포스터**



신선한 자연산 광어와 도미가 팔딱팔딱!

제17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2023.5.13. (토) - 5.28. (일)
서천 마량진항 일원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58

주최/주관 | 서면개발위원회
문 의 | 서천군종합관광안내소 041)952-9525
서면개발위원회 041)952-9123

홍보 및 협조사항

8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 예산군 】

- ◆ 윤봉길의사 상해의거를 기념하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
- ◆ 축제를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축제개요

- 축 제 명 :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 주 제 : ‘매헌의 발자국, 영웅의 길 우리 함께 걷다!’
- 기 간 : 2023. 4. 29.(토) ~ 4. 30.(일) / 2일간
- 장 소 : 덕산면 충의사·도중도 일원
- 주최·주관 : (사)매헌윤봉길월진회
- 주요 프로그램
 - (공 연) 평화축제 축하공연(장민호), 조선팝 드랍 더 비트, 에이불비
매헌아리랑 등
 - (체 험) 나는 윤봉길이다 재현극, 수통텀블러 만들기, 매헌놀이터,
불명물명 썸버스킹, 스마트엔티어링 저한당의 일곱가지 비밀을
찾아서 등
 - (경 연) 어린이 시낭송대회, 전국 평화사랑 그리기 대회
 - (기 타) 기념식 퍼레이드, 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 등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각 시·군 이·통장 단체 등 회의 시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안내
등 홍보 협조

붙임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홍보 포스터

YUN BONG GIL PEACE FESTIVAL

2023 | 4.29 (토) ~ 30 (일)

충의사 일원 | 저현당 | 광현당 | 도충도

윤봉길

평화축제

개헌의 발자국, 영웅의 길 우리 함께 걸자!

주최 · 주관 시·도·시·군·구·자치단체협의회

후원 문의 041) 338-9514 (축제추진위) www.ybgfestival.net

참 고 자 료

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93
2. 협의회 세입·세출 현황 보고 95
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96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I 사업개요

- (제작목적)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활동과 시군 홍보
- (사업명)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 (제작기간) 2개월
- (주요내용)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 소식 및 홍보
- (예산소요액) 8,000천 원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II 주요내용 세부 수록 내용 별첨

- (협의회 활동사항) ■ 소개
 - 정기회의(격월) 자료, 협의회 회의결과, 공지사항 등 수록
- (시군 축제등 홍보) ■ 소식
 - 시군별 축제, 행사, 홍보사항 등
- (지방자치 등 정책자료) ■ 활동
 - 지방 자치, 자치 분권 등 관련 자료
- (고향사랑 기부제) ■ 소통
 - 시군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III 그동안 추진사항

- (23. 4. 3 ~ 4. 4.)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과업지시서 작성
- (23. 4. 10.) 사업자 선정

IV 앞으로 추진계획

- (23. 4. 10. ~ 5. 15.) 홈페이지 게재 자료 수집 등
- (23. 5. 15. ~ 5. 31.) 홈페이지 시범 운영, 시스템 오류 보완
- (23. 6월 中) 최종 납품, 홈페이지 운영

참고1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홈페이지 수록 내용(안)

구 분	목 록	주요내용	비 고
협의회 소개	인 사 말	· 회장(천안시장)	
	설립취지 및 연혁	· 설립취지, 연혁, 역대회장소개 등	
	회 원 현 황	· 15개 시장·군수	
	조 직 구 성	· 협의회 사무국 조직구성 등	
협의회 활동	정 기 회 의	· 회의자료(민선8기), 사진	
	교 류 활 동	·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등	
	대 외 협 력	· 협약, 결의사항 수록	
협의회 소통	시군비전 및 공약	· 15개 시장·군수 공약사항 링크	
	시·군뉴스	· 언론사의 보도자료 링크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링크	
협의회 소식	공 지 사 항	· 협의회 관련 회의 및 일정 공지	
	보 도 자 료	· 민선8기 협의회 관련 보도	
	자 료 실	· 지방자치, 자치분권관련 자료등	
	사진 영상 갤러리	· 15개 시군 축제, 행사	

협의회 세입·세출 현황 보고

□ 세입·세출현황 (2023.4.15. 기준)

○ 세입예산 현재표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계	이월액	예금이자	자치단체부담금
계	246,926,516	96,879,123	47,393	150,000,000

○ 세출예산 현재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세입) ①	지출액 ②	잔액 (①-②)	비고
계	246,926,516	246,926,516	94,604,850	152,321,666	

○ 지출 세부내역(2022.7.1.~2023.4.15.)

(단위 : 원)

연번	구분	지출액	비고
	계	94,604,850	
1	정기회의 운영비 (회의책자 제작 등 식대)	4,310,000	
2	인건비 (파견수당, 정책실장 급여 및 4대보험)	55,665,300	
3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61,390	
4	국내여비	2,473,560	
5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694,600	
6	호우피해지역 수해복구지원 (보령, 부여, 청양)	30,000,000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정) 1998. 08. 22.
(일부개정) 2019. 05. 27.
(일부개정) 2019. 09. 30.
(일부개정) 2020. 07. 13.
(일부개정) 2021. 09.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결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협의회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 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는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